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조주홍 의원 외 25명)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주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
----------	-----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조주홍 · 이수경 · 오세혁 ·
안희영 · 배진석 · 김봉교 ·
김희수 · 황병직 · 최병준 ·
박승직 · 박영환 · 박차양 ·
박창석 · 박채아 · 박태춘 ·
박판수 · 신호광 · 이선희 ·
이재도 · 이종열 · 이춘우 ·
곽경호 · 홍정근 · 정세현 ·
임미애 · 김종영 의원
(26명)

1. 제정이유

- 갑작스런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 이에,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도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 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심장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나.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마. 심폐소생술 교육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사.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8조)
- 아.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11조)

3. 조 례 안 : 붙임참조

4.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5. 관련부서 협의

-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6.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장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6호의 계획에 포함하여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 신고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도민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지도안 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덕 환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18. 11. 2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 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보건정책과)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보건정책과		의견 없음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재정지원) :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함
-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2019년 진행 사업의 2배)

3. 비용추계의 결과

-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으로 1차년도, 2차년도 교육용 차량 신차 구입 및 차량 교체 등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23억 6천만원(국비 10억 4천만원, 도비 13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비	460,000	418,000	418,000	418,000	418,000	2,132,000
	○ 교육용 차량 운영비	76,000	76,000	26,000	26,000	26,000	230,000
	소계(b)	536,000	494,000	444,000	444,000	444,000	2,362,000
□ 총 비용		536,000	494,000	444,000	444,000	444,000	2,362,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209,000	209,000	209,000	209,000	209,000	1,045,000
도비	일반회계	327,000	285,000	235,000	235,000	235,000	1,317,00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536,000	494,000	444,000	444,000	444,000	2,362,000

5. 부대의견

- 조례 시행으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도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6. 작성자

-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지방보건서기 권문주(054-880-380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안 제8조(재정지원)

나. 비용추계 방법

-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지원, 이동식응급처치교육용차량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 비용 작성

2. 비용추계시 중점 고려사항

가. 현재 교육 실시 인원 및 자원의 증가를 고려하여 추계

※ 예산추계 산출내역서 첨부

예산추계 산출내역서

1.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소요예산 : 460,000천원

[단위:천원]

구분	사 업 규 모	계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자부담	
계		460,000	209,000	251,000		
이론 및 실습강사료 (전문의)		80,000	40,000	40,000		200*2인*200회(1인/200회) (총 교육시간 이론2)
실습강사료		240,000	120,000	120,000		150*8인*200회(4인/200회) (총 교육시간 실습2,평가1)
코디네이터		72,000	36,000	36,000		3,000*2인*12개월 (차량운전 및 교육관리)
운영비 (업무관련출장, 교육소모품, 마네킨, 팜플렛, 홍보현수막, 다과비, 교재비, 인쇄, 수료증 등)		20,000	10,000	10,000		50*400회(2팀*200회)
교육장비구입비* (장비 1세트 추가구입)		42,000		42,000		평가용 마네킨 5,000X2 실습용 마네킨 500X40 영아 마네킨 300X40
교재검수비		2,000	1,000	1,000		500*4명 (매년 2회 지침 개정, 설문조사 및 반영)
위원회운영비		4,000	2,000	2,000		500*8회

※ 교육장비 구입

- 교육 확대(1팀→2팀)로 응급처치 교육장비를 사업수행 첫째 1세트 추가 구입

2. 이동식 교육용차량 운용 소요예산 : 76,000천원(도비)

[단위:천원]

구분	사업 규모	계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자부담	
계		76,000		76,000		
유류비		20,000		20,000		50*400회(2대*200회) (이동거리별산정)
차량유지보수비		4,000		4,000		200*2대*10개월
차량보험료		2,000		2,000		차량보험료영수증
차량 구입료		50,000		50,000		교육용 차량 (차량가격 38,000)

※ 차량 구입

- 교육 확대(1팀→2팀)로 응급처치 교육차량을 사업수행 첫해 1대 추가 구입
- 차량 출고 후 내부개조를 위한 비용 추가됨
- 기존 차량의 노후(2010년 구입)로 2020년 교체 필요



수신 보건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보건정책과-39205(2018.11.27.)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1부. 끝.

예 산 담 당 

주무관	이흥작	예산총괄팀장	서정찬	예산담당관	전영 2018. 11. 28. 박재구
참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738	(2018. 11. 28.)	접수	보건정책과-39397	(2018. 11. 29.)
주	3876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합대로 466, 경북도청		/ 168	
전화번호	054-880-8613	팩스번호	053-950-2169	/ redsk@korea.kr	/ 비공개(6)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조 례 명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비용수반)	○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수 있음(제8조)	
담당부서 비용추계	○ 총 2,362백만원(국 1,045, 도 1,317)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함 -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교육비 지원사업과 2010년도 차량구입지원 사업 기준으로 산출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362백만원으로 도비 부담 1,317백만원(부서 비용추계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2019년 사업량의 2배를 적용한 것으로 다소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사료됨. ○ 최근 국내경기 회복 지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의한 국비 매칭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매칭 비율을 준수하고, 사업 확대 시에는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정 사업량을 산정하여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임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이 두근	이 두근	
오 세혁	오 세혁	
안 희 명	안 희 명	
배 진 석	배 진 석	
김 용 상	김 용 상	
김 현 우	김 현 우	
남 승 박	남 승 박	
최 병 권	최 병 권	
최 기 현	최 기 현	
황 영 화	황 영 화	
홍 지 현	홍 지 현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백 창석		
박 래 아		
김재현		
박 판 투		
신 늘 라		
이 천 희		
서 재 도		
이 종 연		
이 종 우		
장 정 호		
홍 정 근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illegible]